

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전자수입인지 환불 계획

1. 관련근거

□ 「수의사법 시행규칙」 제28조(수수료)

- ③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. <신설 2011.4.1., 2021.9.8.>
1.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: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
 2.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
 3.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: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
 4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: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
 - 가.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·조부모·형제·자매,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(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)
 - 나.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
 - 다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진찰·치료·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

2. 환불절차

□ (환불신청) 환불 희망자 '환불 신청서' 및 '증빙서류' 등 제출(이메일)

○ (신청기한) 25.3.25일 18시까지 환불 신청 가능

○ (신청서) 환불 희망자는 인적사항, 환불대상 선택, 환불사유 및 환불희망 계좌번호 등을 작성하여 제출

○ (증빙서류) 환불 희망자는 환불대상 및 사유를 충분히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사망, 입원, 격리처분 등을)를 '신청서'와 함께 제출

* 신청서(「붙임」) 및 관련서류는 이메일(info@vt-exam.or.kr) 제출

□ (환불접수) 환불 관련 서류 접수 및 유형 분류 등(대한수의사회)

□ (여부판단) 제출 신청서·증빙서류 검토(사실확인 등), 환불 여부 판단

○ 증빙서류 검토를 통해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서류가 미흡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 요청 등 추진(농림축산식품부)

